

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54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7. 6. 5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신청사 부지매입비 반영을 위한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
- 부산시 징수교부금 추가내시로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일부변경 등 기금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.

2. 주요골자

- 기금운용 변경계획(안)

(단위 : 백만원)

기 금 명	변 경	당 초	증 감	비고
합 계	11,708	11,427	281	
청사건립기금	9,945	10,021	△76	
여성발전기금	178	26	152	
식품진흥기금	130	99	31	
재난관리기금	1,455	1,281	174	

- 세부내용 :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참조

3. 근거법령 :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